

건강진단결과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화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결과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2337호, 2010. 9. 6)

질의 1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4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 작성하는 건강진단결과표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소견서에 개별 근로자에 대한 법정서식 항목인 “공정(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연수, 건강구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적합여부”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위반인지(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59호, 2010. 8. 26)

답변내용

○ 본 사안의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를 말하고 있는 바,

-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다 할 수 있음.

※ 의료기관 중 국·공립병원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며, 사립병원 등은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제6조제3호의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자”에 해당됨

○ 한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5조 등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에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의 제공 등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공정(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연수, 건강구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적합여부” 등 법정서식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 2

○ 위 건강진단결과표의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소견서상의 검진소견란에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에 대한 검진결과(검사) 수치를 의사의 재량적(전문적) 판단하에 건강진단기관에서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에서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적합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는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검진소견란에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의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검진결과를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이상소견이 있는 자에 대한 검진결과(검사) 수치는 관련지침 및 규정 등을 참고하여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함